

## 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수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공고」(공고 제 2023-180호, 2023.3.17.)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한 수정공고입니다.

### < 주요 수정사항 >

구분	기존	변경
신청자격	설치 희망 기초지자체별로 (이하생략)	설치 희망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로 (이하 생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 소상공인(창업자)이 소상공인 혁신허브 물건 내에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한 물건</li> <li>* (예시) 지자체의 행정재산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 재산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 제3자에게도 전대 제공이 가능한 물건임을 확인할 것</li> </ul>	삭제
제출서류	○○광역시(도)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서(총괄)	○○광역시(도)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서(총괄) [별첨 서류 포함]
	○○시·군·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서 [별첨 서류 포함]	○○시·군·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 서 [별첨 서류 포함] (필요시)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예비 소상공인(창업자)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직(職)·주(住)·락(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운영

### □ 사업예산 : 22.5억원(민간자본보조)

### □ 선정규모 : 3개 이내 후보지역 \* 우수 후보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 사업내용 : '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후보지역 모집 추진

- (지자체) 소상공인 혁신허브 물건(건물, 공간) 제공(최소 5년 이상)
  - \* 전용면적 600㎡(180평) 이상의 물건
-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리모델링(최대 10억원), 해당 시설 운영
  - \* (리모델링) 커뮤니티 라운지, 회의실, 미디어작업실 등 커뮤니티형 창업거점 공간
  - \*\* (프로그램) 창업상담·정보 제공,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 2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12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 \*\* 기존 기설치 또는 설치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 광역지자체가 총괄 신청하되, 지역 내에 설치 희망 기초지자체가 복수로 있을 경우 복수의 지자체(최대 3개)를 설치 후보로 신청 가능
- 설치 희망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혁신허브 구축이 가능한 대상 물건을 복수로 추천 가능

□ **기본요건** : 아래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공간 기본요건>**

구분	내용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0㎡(180평) 이상의 물건 제시</li> <li>* 필요 시 건물 및 층별 분리는 가능하며 가급적 1층 소재 등 외부 접근이 유리한 건물 추천 요망</li> </ul>
건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li> <li>* 건축물관리대장 내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1종</li> </ul>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에서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건물, 공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 제공 가능 조건</li> <li>* 영구 무료 임대 또는 <b>최소 5년 무상 사용 가능한 물건</b>으로 제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소유가 아닌 공공 및 민간 건물 등을 제공 시, 유료 임차가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지자체 부담이며, 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사용 안정성이 보장된 물건</li> <li>후보 물건에 대해 혁신허브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정성 상황을 사전점검하여 구조안정성이 보장된 건물을 우선 추천하고, 구조보강 등 후속조치 필요 시 관련 계획(일정,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포함) 등을 제시</li> </ul>

**3 평가 및 선정계획**

□ **평가절차**

서류검토	①현장조사	②발표평가	③최종선정
제출서류 확인	후보건물 현장조사	발표(PT)평가	3개 이내
공단 (청년창업팀)	→ 공단 (심의위원회)	→ 공단 (심의위원회)	→ 공단 (심의위원회)
'23.4월 11일	'23.4월 중순	'23.4월 중순	23. 4월 말

① (현장조사) 공단 실무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후보지역 건물을 현장방문하여 사실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실시

\* 조성 예정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사실 여부 확인 및 공간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대면평가 시 평가자료로 활용

② (발표평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위원회(5명)를 구성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발표평가 추진

○ 발표 30분(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대편(PT)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

③ (최종선정) 후보지역(후보건물) 최종 선정(3개 이내)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조정

\* 선정규모,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

□ **선정방향**

○ 소상공인 비율, 3년 이내 폐업률, 실업률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물건의 적합성, 지자체의 협업계획, 관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

□ **발표 평가항목**(100점 만점 : 정량 20점, 정성 8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역	배점
정량* (광역 단위)	소상공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사업체수</li> <li>*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li> </ul>	5
	신규 창업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전년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li> <li>* 국세청「국세통계-사업자 현황」</li> </ul>	5
	3년 이내 폐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신생기업 3년 생존율 감소</li> <li>*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li> </ul>	5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실업률</li> <li>*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li> </ul>	5
정성 (광역·기초 단위)	입지/물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등 지리적 접근 편리성</li> <li>광역 지자체를 포괄하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li> <li>소상공인 혁신허브 기능 수행의 적합성</li> </ul>	20
	지자체의 협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의 인력, 자원 등과 소상공인 혁신허브의 연계방안</li> <li>*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활용한 지자체 신규 사업 추진계획 및 기존사업 연계 계획 등</li> <li>온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예비 소상공인(창업자) 발굴계획</li> <li>소상공인 혁신허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 지원 방안</li> </ul>	4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li> </ul>	15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3. 17(금) ~ '23. 4. 7(금)

\* 신청·접수기간 : '23. 3. 27(월) ~ '23. 4. 7(금), 16:00까지

□ 신청접수 :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시·도→중기부·소진공)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첨부양식 포함)를 제출한 지자체에 한해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준수

\*\* 신청서 작성시 시도에서는 시도의 신청서류 외에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구와 관련한 신청서를 총괄 취합하여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1	사업 신청서	【서식 1】
2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서	【서식 2】
3	○○광역시(도)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서(총괄) [별첨 서류 포함]	【서식 2-1】
4	○○시·군·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제안서 [별첨 서류 포함] (필요시)	【서식 2-2】

##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준수
  -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 선정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신청기관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비(국비)는 지원대상 지역 선정 후 소상공인 혁신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

\* 해당 지자체로 예산이 교부되지 않음

- 지자체에서 제공한 건물 내 시설·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되,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외관 보수 비용(필요시) 등의 경우는 지자체 자체 부담 필요

- 소상공인 혁신허브 인프라 구축 이후 매년 예비창업자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직접 주관

□ 문의처

접수처	연락처	이메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5	bm@semas.or.kr
창업지원실(청년창업팀)	042-363-7722	

**참고1**

**소상공인 혁신허브 조성**

□ **(목적)** 지역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직주락(職住樂)형 혁신 공간 조성

□ **(내용)** 기존 '교육' 공간에서 '교육·체험+운영'의 공유형 공간으로 개편하고, **코워킹스페이스·스튜디오·공방** 등으로 구성

< 공간구성 모형도(예시) >

<b>3층</b>	· 24시간 작업 및 주거가능, 스튜디오 공간
<b>2층</b>	· 코워킹스페이스, 독립 및 보육공간 등
<b>1층</b>	· 레스토랑&카페, 음료, 세미나, 전시·공연
<b>B1층</b>	· Shop, 문화실현, 공방



○ **(공간구축)** 코워킹 공간, 회의실, 공유주방, 미디어 작업실, 휴게공간 등 **교류 및 창업활동**을 위한 지원공간 구축(면적 600㎡(180평) 이상)

< 공간 구성(예시) >

구분	공간 활용
코워킹스페이스	오픈식으로 된 열린 공간으로 강연, 공연, 소셜다이닝 등 운영공간
세미나실	스튜디오 형식
회의실	강연이나 소모임 회의,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
공유주방	커피 등 간단한 음식 조리가 가능하며, 소셜다이닝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미디어 작업실	영상촬영 및 편집, 팟캐스트 등 미디어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
체험점포	제품 제작 및 판매실습이 가능한 공간

○ **(프로그램)** 청년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체험, 창업지원(최대1억원) 및 골목상권 교류·혁신 아카데미, 상권·점포 컨설팅, 지역자산(건물·빈집·폐교·문화재)의 상업·문화 재생 등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지자체는 부지 및 건물(전용면적 600㎡(180평) 이상)를 제공하고, 중기부·민간은 해당 시설 운영

